#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4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김승수·김선교·김예지

서지영 · 조승환 · 박성훈

강대식 · 김정재 · 권영진

박성민 · 김희정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1헌마460). 그러나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오히려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

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법률 제 호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법관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제43조(결격사유)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		
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	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6		
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			
터 <u>5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u>10년</u>		
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7		
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의 역할을 한 날부터 <u>3년</u> 이	<u>5년</u>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